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018년 1월 19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 18.(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1. 18.(목)	담당부서	유통물류과
담당과장	서기웅 과장(044-203-4380)	담 당 자	이준우 주무관(044-203-4822)

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 소상공인 입점 대규모점포 관리에 대한 투명성·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는 1. 12.부터 대규모점포 관리와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8.1.12.~2.23.)**했다.

*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17.10.31일 공포, '18.5.1일 시행

○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이하 '관리자') 선임 방법, 관리비 내용 및 공개 방법, 회계감사 방법, 관리규정 제·개정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전체 입점상인을 대표토록 선임된 관리자(유통산업법 제12조)

□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 **(관리자 선임방법)**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동의권을 행사**해 **관리자를 선임**하고

- **대리인**을 통하거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관리방법) 관리자**는 **관리비**를 **세분화**해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등 9개 항목

- 대규모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Indus

○ **(회계감사 방법)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관리규정 제·개정 방법) 관리자**는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하여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 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보급해야 함(유통산업법 제12조의6)

□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그간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대규모점포 관리**가 **불투명하게 운영**된 결과 관리자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입점상인**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징수된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했다."라고** 말하고,

* (입점상인 피해사례) 주차장 건설비를 입점상인이 부담하고 그 사용료도 내는 사례, 관리자가 측근을 불법 채용하여 직원 인건비를 매년 5억원 이상 부당 이득

○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자**가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입점상인에게 공개**하고 **입점상인**은 **관리자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있어 **대규모점포**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강조했다.

□ **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해 **5. 1.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붙 임】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이준우 주무관(☎ 044-203-43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17.10.31일 공포, '18.5.1일 시행

1 입점상인의 동의권 등(제7조의4)

* 매장면적의 1/2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 입점상인의 2/3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이 대규모점포관리자(법 제12조)

○ 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점상인**은 ① **사업자 등록을 하고, ②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규정**

○ **대리인**을 통하거나 **전자적** 또는 **서면**의 **동의권 행사방식 구체화**

○ 관리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받기 1주일 전** 동의권 행사방법, 동의기간 등을 **입점상인에게 통지**

2 관리비 관리 방법 (제7조의 5, 6)

○ 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할 수 있는 **관리비**의 **세부항목**을 **규정**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집행 월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등 9개 항목

○ 대규모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체결하는 경우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계약**

3 회계감사 (제7조의 8)

○ **감사기간·서류·기준** 등 회계감사 방법 명확화

항목	내용
감사기간	회계연도 종료후 9개월 이내
감사서류	① 재무상태표 ② 운영성과표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④ 주석
감사기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회계감사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감사인은 관리자에게 보고

4 관리규정 제·개정 (제7조10)

○ **제정**의 경우, 관리자는 관리규정(안)을 입점상인에게 알리고 **관리자 신고후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하여 관리규정을 **제정**

○ **개정**의 경우, **입점상인 2β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개정**

Indus

붙 임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5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등의 경우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의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간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선정기준이 불문명하고,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과다한 관리비를 청구하거나 징수된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선정기준인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선정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선정시 현장 혼란을 최소하려는 것임. 또한,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는 관리비등 내용, 관리비등 내역 청구·공개방법, 회계감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관리업무를 자의적으로 수행하지 않도록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관리규정이 합리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관리규정의 제·개정방법 등 세부 내용과 표준관리규정에 포함될 기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안 제7조의4)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대규모점포등에 입점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법 제12조제2항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선정 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2) 2개 이상의 점포에서 영업하는 상인과 공동으로 영업하는 상인은 하나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대리인 또는 전자적 방법 등 동의권 행사방식을 구체화 함

4)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받기 1주일 전에 동의권 행사방법 등을 입점상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관리비 내용 및 관리방법 등(안 제7조의5, 6)

Indus

1)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는 관리비등 내용을 세부화하고 관리비등 내역 청구·공개방법 등을 구체화함

2) 대규모점포등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용역 등을 체결하는 경우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계약하도록 함

다. 입점상인의 열람대상 정보(안 제7조의7)

1) 입점상인이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자료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규정

라. 회계감사 방법(안 제7조의8)

1) 감사기간, 감사대상 서류, 감사기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등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 방법을 세부 규정함

마. 관리규정의 제·개정 방법(안 제7조의9)

1)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대규모점포등관지자가 제정할 관리규정의 제정기한, 제·개정 방법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함

바. 표준관리규정(안 제7조의10)

1) 시·도지사가 마련·보급해야하는 표준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전자우편(이메일) : jaw78@motie.go.kr
- 전화 : 044-203-4822
- 팩스 : 044-203-4738

Indus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 (입점상인의 동의권) ① 입점상인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대규모점포등에 입점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입점상인이 2개 이상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더라도 하나의 동의권을 갖는다.

③ 공동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입점상인은 동의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④ 동의권은 대리인을 통하여 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동의권을 행사하는 방법

2. 관리규정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 확인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호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

⑤ 법 제12조제2항제2호가목의 전체 매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운영되지 않는 매장의 면적은 제외한다.

⑥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동의의 의사는 제4항의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점상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⑦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받기 1주일 전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구성방법 및 운영계획, 동의권 행사방법과 동의기간을 입점상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관리비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비용으로 하고, 각 비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3의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냉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냉방·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9. 위탁관리수수료

②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Indus

4. 지역난방 방식인 대규모점포의 냉·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漏水)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개 이상의 점포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점상인이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입점상인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관리비등의 항목별 산출명세, 연체내용,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점상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비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⑥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법 제12조의3 제4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등의 명세(제1항제6호·제7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포함한다)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공용부분 및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대규모점포등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6(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공개경쟁입찰의 절차 및 방식으로 법 제12조의3 제5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이 일정액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긴급하게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른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7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법 제12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제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8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③ 감사인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ndus

제7조의9 (관리규정의 제정 등)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의6제4항의 표준관리규정을 참조하여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관리규정의 제정에 관한 동의요건에 관하여 제7조의4제1항에서 제6항을 준용한다.

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 해당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점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공고·통지하고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개정 목적
2. 현행의 관리규정과 달라진 내용
3. 표준관리규정과 다른 내용

제7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10 (표준관리규정) 법 제12조의6제3항에 따른 표준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점상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2. 관리규정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3. 입점상인의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대규모점포등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사용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6.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

7. 제7조의5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관리비 등의 점포별 부담액 산정 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8. 법 제12조의4제3항에서 정하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복사 및 열람에 관한 방법

9.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입점상인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0.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1.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2.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13. 관리규정을 위반한 자와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1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별표 3의2,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ndus

[별표 3의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12조의3 제1항 관련)

관리비 항목	구성명세
1. 일반관리비	가. 인건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나. 제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 제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라. 피복비 마. 교육훈련비 바. 차량유지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사. 그 밖의 부대비용: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 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5. 승강기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6. 냉난방비	냉방,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7.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8. 수선유지비	가. 대규모점포의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나.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다.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라.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9. 위탁관리수수료	건물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대규모점포등관리자와 건물관리업자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제2호마목에 따른 경과일수를 산정할 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경과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1호	100	300	500
나.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2호	100	300	500
다.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전년도 점포당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3,000	7,000	10,000
2) 전년도 점포당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1,000	3,000	5,000
라.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법 제52조제3항제2의2호	100	300	500
마.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법 제52조제3항제2의3호	100	300	500
바. 제1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법 제52조제3항제2의4호	100	300	500
사. 제1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법 제52조제3항제2의5호	100	300	500
아.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법 제52조제3항제2의6호	100	300	500
자. 제1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	법 제52조	100	300	500

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제3항제2의 7호			
차. 제1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법 제52조 제1항 제1호	300	700	1,000
카. 제1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법 제52조 제3항제2의 8호	100	300	500
타.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법 제52조 제1항 제2호	300	700	1,000
파. 제1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규정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법 제52조 제3항제2의 9호	100	300	500
하.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3호	100	300	500
거.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4호			
1) 경과일수 10일 이내		10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20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30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50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80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100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200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300		
너.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5호	100	300	500
더. 법 제45조제2항의 보고에 있어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6호	100	200	300

Indus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4 (입점상인의 동의권) ① 입점상인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대규모점포등에 입점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입점상인이 2개 이상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더라도 하나의 동의권을 갖는다. ③ 공동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입점상인은 동의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④ 동의권은 대리인을 통하여 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동의권을 행사하는 방법

		2. 관리규정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확인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호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 ⑤ 법 제12조제2항제2호가목의 전체 매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운영되지 않는 매장의 면적은 제외한다. ⑥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동의의 의사는 제4항의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점상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⑦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받기 1주일 전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구성방법 및 운영계획, 동의권 행사방법과 동의기간을 입점상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5(관리비 등) ① 법 제12

Indus

		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비용으로 하고, 각 비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3의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냉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냉방·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9. 위탁관리수수료 ②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대규모점포의 냉·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漏水)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개 이상의 점포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점상인이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입점상인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관리비등의 항목별 산출명세, 연체내용,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점상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비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Indus

		상호저축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⑥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법 제12조의3 제4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등의 명세(제1항제6호·제7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포함한다)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공용부분 및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대규모점포등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6(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공개경쟁입찰의 절차 및 방식으로 법 제12조의3 제5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이 일정액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긴급하게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른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7조의7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법 제12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신 설>	제7조의8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Indus

	③ 감사인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9 (관리규정의 제정 등)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의6제4항의 표준관리규정을 참조하여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관리규정의 제정에 관한 동의요건에 관하여 제7조의4제1항에서 제6항을 준용한다. 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 해당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점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공고·통지하고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개정 목적 2. 현행의 관리규정과 달라진 내용 3. 표준관리규정과 다른 내용
<신 설>	제7조의10 (표준관리규정) 법 제12조의6제3항에 따른 표준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점상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2. 관리규정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3. 입점상인의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대규모점포등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사용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6.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 7. 제7조의5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관리비 등의 점포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8. 법 제12조의4제3항에서 정하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복사

Indus

	및 열람에 관한 방법 9.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입점상인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0.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1.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2.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13. 관리규정을 위반한 자와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1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